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82-70-8799-8770 Fax:+82-70-8799-8774 E-mail: krgst@krs.co.kr Person in charge: KIM Donggi

No: 2024-ETC-02 Date: 2024.07.16

제목: EU MRV/ETS 관련 최신규정 기술정보

EU ETS의 해운분야 도입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선박의 기국과 관계없이 유럽경제 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의 관할 구역 내 항구에 기항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은 연간 기준으로 EU MRV 항차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관리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EEA 영토 내 항구 입항 금지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선급은 독일인정기구(DAkkS)의 공식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EU MRV 검증기관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발간된 기술문서('해운분야 EU ETS 도입에 따른 초기 이행 지침')에 이어, 국내 이해관계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EU MRV 및 ETS 관련 최신규정에 대한 영한대역 기술정보를 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EU MRV/ETS 관련 규정 리스트.

- 2) EU MRV 관련 규정 영한대역.
- 3) EU ETS 관련 규정 영한대역. (끝).

배부처 : 검사원, 선주, 관련 업계 종사자

##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

KR Page 1 / 1(K)